

## 2019년도 『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』 지원계획 공고

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」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년 6월 18일  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### 1

### 지원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기반 혁신성장 기업 발굴·중점육성을 통해 지역 R&D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 도출

#### □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
사 업 명	•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
사업내용	•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*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(R&D) 지원
사업예산	• 총 140,000천원(2개 과제)
사업기간	• 2019. 7. ~ 2020. 4. (10개월)
지원유형	• 핵심기술 응용 관련 자유주제로 신청 가능 ※ 결과물 : 핵심기술 응용 서비스 또는 제품(현장 적용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)
*핵심기술	•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블록체인 응용(서비스, 제품 등) 분야
지원대상	• 인천 소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응용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전담기관	• 인천테크노파크(관리부서 : 기업지원본부 ICT진흥센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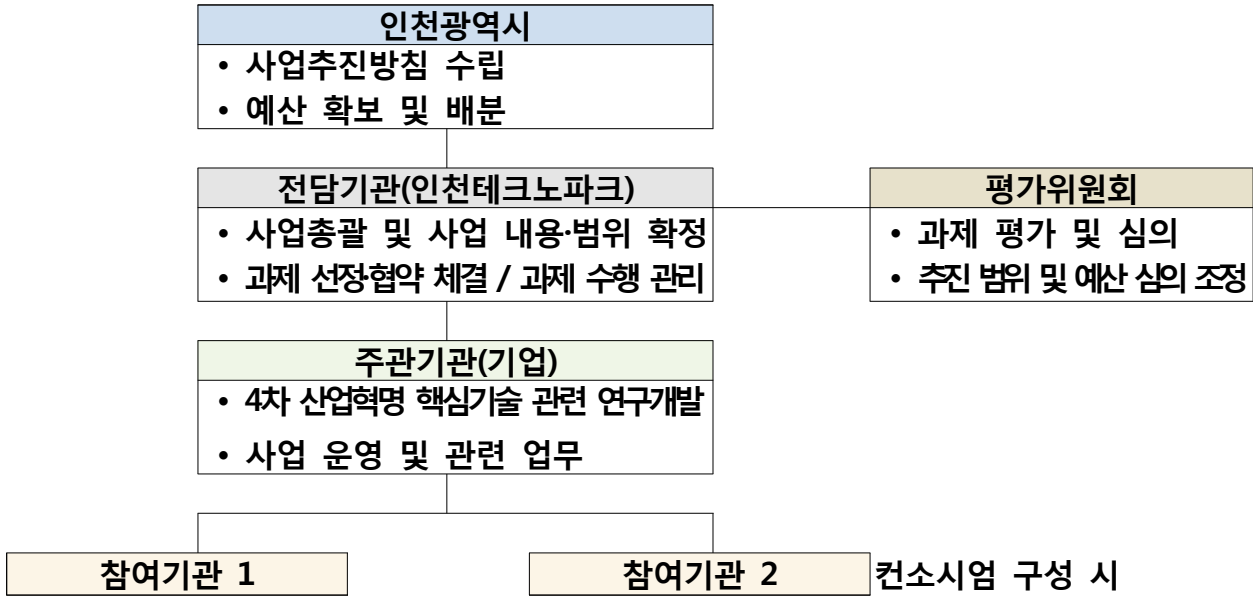
구 분	핵심기술 연구개발(R&D) 지원	
개 요	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 및 제품 기술 연구개발 지원	
작성방법	[붙임1] 사업계획서 작성	
지원규모 (과제당)	2개사(70,000천원 이내)	
협약기간	2019. 7. ~ 2020. 4.	
추진방식	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관기관 : 인천소재 중소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고일 기준 인천 본사 소재 기업 또는 과제 선정 후, 3개월 이내 인천지역으로 본사(또는 기업부설연구소) 이전이 가능한 기업</li> </ul> </li> <li>○ 참여기관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분야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인천 외 지역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컨소시엄 예 및 지원금 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 + 참여1 : 주관 60% 이상, 참여 40% 이하</li> <li>- 주관 + 참여 2개 : 주관 40% 이상, 참여 각30% 이하</li> <li>- 주관 + 참여3개 이상 : 주관 40% 이상, 참여기관 총 60% 이하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	
지원조건	<b>총 사업비의 75%이내 시비 지원 /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25% 이상</b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사업비 편성 예시(시비 70,000천원 인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70,000(시비) : X(민간부담금) = 75% : 25%</li> <li>→ X = 23,333, ∴ 민간부담금 23,333천원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	
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	기업 주도 컨소시엄	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은 총사업비의 25%이상, <b>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%이상</b>
	기업 단독	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민간부담금 편성 예시(23,000천원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금 : 4,600천원 (20% 기준)</li> <li>- 현물 : 18,400천원 (80% 기준)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
결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</b> 시작품과 같은 유형적 결과물이나 지식재산권,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<b>주관기관 소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가능</li> <li>※ 전담기관은 사용권 보유</li> </ul> </li> </ul>	
결과물 및 성과	<b>1) 핵심기술 응용 제품 및 서비스</b> ※ 개발 기술/제품/서비스의 <b>현장 적용</b>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<b>2) 청년(만 39세 미만)고용(권고사항 - 선정 시 우대)</b>	
사업종료 후 제출서류	<b>1) 결과보고서</b> <b>2) 연구개발 관련 산출물</b> <b>3) 사업비 회계정산자료(정산기준은 '9. 유의사항'의 준용규정 참고)</b> ※ 사업종료 이후 별도 안내 예정	

※ 핵심기술 :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블록체인 응용(서비스, 제품 등) 분야

3

추진체계

[ 추진체계 ]



4

신청자격 ※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주관기관 :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

참여기관 : 지역 내 소재 정부출연(연), 유관 연구기관, 대학 및 기업 등

※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은 연구개발 지원 사업만 해당(인천 외 지역 가능)

(주관 및 참여) 공통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)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 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 - 이미 개발된 연구개발(R&D) 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,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

## 5

## 지원대상 제외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- 부도,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처분,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(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), 파산,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,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된 경우 등
-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※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## 6

## 신청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19. 6. 18(화) ~ 2019. 7. 10(수) 17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  - ※ 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
  - ※ **【첨부1】** 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,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
  - ※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권장
- 관련문의 : 인천테크노파크 ICT진흥센터 장희태 대리  
(☎ 032-260-0654, E-mail: htjang@itp.or.kr)

## □ 평가절차 및 일정

공고	⇒	사업계획서등 온라인접수	⇒	서면평가	⇒	대면(발표) 평가	⇒	결과통보 및 조정 사업계획서	⇒	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
6.18~7.10		6.18~7.10		7.10~7.11		7.16		7.17~7.18		7.19~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## □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연구개발	비고
1	사업계획서 1부	○	주관
2	<서식1>참여의사확인서 1부	○	주관 참여
3	<서식2>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	○	주관 참여
4	<서식3>민간부담금(현금.현물)출자 협약서	○	주관 참여
5	최근 2년간 재무재표 각1부 ※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	○	주관 참여
6	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	○	주관 참여
7	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증서 사본 1부** ※ 설립예정 기업은 추후 제출	○	주관 참여 (해당시)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※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	○	주관 참여
9	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	○	주관 참여
10	<서식4>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※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	○	주관 참여
11	<서식5>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	○	주관
12	<서식6>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(해당시)	○	주관

\* 재무제표(손익계산서, 재무상태변동표, 제조원가명세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) 제출시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」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,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(회계사) 확인 자료 제출

\*\*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

7

추진절차



8

평가절차 및 기준 ※ 사업추진체계, 기술성, 사업성 및 계획 적정성 등

□ 평가절차

- 서면평가 : 사업계획서, 제출서류,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, 참여제한여부 등 검토
- 발표평가 : 과제 책임자의 발표평가 (질의응답 포함 30분) 실시
  - ※ 평가위원별 최고,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(평균) 60점 이상인 과제를 '지원 가능',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  - ※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(연구비)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·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

## 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 점
지원 필요성 (20)	•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•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	20
연구개발의 창의성 (30)	연구 주제, 방법론 등의 독창성 및 혁신성	15
	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우월성	15
정책 부합성 (20)	연구 목표 또는 목적 등 연구내용과 사업 정책의 부합성	20
연구역량 (10)	•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•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	10
파급효과 (10)	연구가 도전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관련 분야 및 인천광역시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	10
기대성과 (10)	• 고용 및 매출 증대 • 사업 수행 이후 성과 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	10
<b>합계</b>		<b>100</b>

※ 서면·발표평가에 적용하되, 내부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

## 9

### 유의사항

#### □ 사업 관련 유의사항

- **청년고용 : 과제당 1명이상 신규고용 권고(평가 시 우대)**
  - 공고일 이후 청년고용 연구원에 대해 주관기관 인건비 2천만원이내로 산정 가능
  - ※ 신청 시 '신규인력채용(예정)확인서'를 제출하고, 본 사업 평가 후 선정 된 경우, 실제 고용 시 참여인력변경 보고를 한 경우만 인건비 지원 가능
  - ※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 :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(학력제한 없음)
-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 불가
- 신규인력채용 :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
-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노트를 1부 이상 작성하여 함
  - ※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지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
-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

## □ 준용규정

본 사업관련 제반업무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**‘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(2019.2.13.)’**을 준용하며, 본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(2019.2.13.)」,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」 등을 준용하여 과제평가 및 수행관리